



제 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장애예술인의 방송 활동 및 방송 창작물 유통 지원 >

■ 최보운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798호)

2026. 2.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장애예술인의 방송 활동 및 방송 창작물 유통 지원(안 제6조제2항)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최보윤의원 등 14인

나. 발 의 일 : 2025. 12. 3.

다. 회 부 일 : 2025. 12. 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공예품, 공연 등의 창작물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함.

그런데 장애예술인 창작물에는 방송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방송은 우선구매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이는 방송, 영화, 출판, 전시, 공연 등 문화예술 활동에 장애예술인의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현행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장애예술인 창작물의 범위에 방송을 포함시킴으로써 장애예술인의 방송 참여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Ⅲ. 검토의견

1. 장애예술인의 방송 활동 및 방송 창작물 유통 지원(안 제6조제2항)

개정안은 장애예술인에 대한 지원 대상 활동에 ‘방송’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방송 창작물’의 홍보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이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에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생략)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장애예술인 창작·전시·공연 활동의 지원	2. -----공연·방송 활동-----
2의2.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공예품, 공연 등의 창작물(이하 “창작물”이라 한다)에 대한 홍보 및 유통 활성화	2의2. ----- -----공연, 방송 등----- -----
3. ~ 9. (생략)	3. ~ 9.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현행법 제6조¹⁾는 국가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본계획에 장애예술인의 창작·전시·공연 활동 지원과 함께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공예품, 공연 등의 창작물에 대한 홍보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 제9조의2²⁾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에 대하여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1)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5년마다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제7조에 따른 장애예술인문화예술활동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장애예술인 창작·전시·공연 활동의 지원

2의2.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공예품, 공연 등의 창작물(이하 “**창작물**”이라 한다)에 대한 홍보 및 유통 활성화

3.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교육 지원

4. 장애예술인 고용 지원

5. 장애예술인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6.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

7.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협력망의 구축·운영

8.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촉진 방안 연구

9. 그 밖에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우선구매를 하는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범위 및 창작물의 종류 등 우선구매를 위한 조치 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우선구매를 실시하는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규정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지원 유형과 창작물의 범위에 ‘방송’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아, 방송 분야에서의 장애예술인 활동이 기본계획상 지원 대상으로 명확히 포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방송 콘텐츠’ 역시 우선구매 제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

이로 인해 방송 분야에서 활동하는 장애예술인의 활동과 그 결과물인 방송 창작물 모두가 제도적으로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한편, 최근 문화예술 환경은 공연장 중심의 오프라인 활동에서 벗어나, 방송·영상·온라인 플랫폼 등 매체 기반 문화예술 활동의 비중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음.

특히, 장애예술인의 경우 물리적 이동이나 공연장 접근성 등의 제약으로 인해 방송·영상 매체가 중요한 창작·표현 수단이자 주요 활동 영역으로 기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 제작·출연·연출 등 방송

활동 전반에 대한 지원 근거가 현행법상 명확히 마련되어 있지 않음.

또한, 장애인예술인이 방송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창작물이 공공기관의 콘텐츠 구매, 홍보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역시 분명하지 않아, 방송 분야에서의 장애인예술인의 창작 성과가 유통·활용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장애인예술인에 대한 지원 대상 활동에 방송을 명시적으로 포함함으로써, 기존의 공연 중심 지원 체계를 방송 등 매체 기반 활동으로 확장하고, 장애인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환경이 달라지고 있는 현실을 제도적으로 반영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아울러, 방송을 장애인예술인 창작물의 범위에 포함함으로써 공공기관 등이 장애인예술인이 제작한 방송 콘텐츠를 구매·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공연·공공미디어와의 연계, 공공 홍보물·교육 콘텐츠·문화 프로그램 등에 장애인예술인의 방송 창작물이 활용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한편, 개정안은 장애인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 범위를 방송 분야 까지 확대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으나,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상 ‘문화예술’의 정의³⁾에는 방송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고,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를 전제로 장애예술인을 정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방송 활동이 문화예술 활동의 영역에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다만, 방송은 예술적 표현과 소통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매체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장애예술인이 방송 매체를 활용하여 창작에 참여하거나 출연하는 활동 역시 문화예술 활동으로 이해될 여지가 있음.

개정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현행법 제3조에서 지원 대상인 장애예술인을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문화예술진흥법」에서 문화예술의 범주를 열거하고 있으나 방송은 이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3)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예술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은 사람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및 뮤지컬 등 지적, 정신적, 심미적 감상과 의미의 소통을 목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 또는 타인의 인상(印象), 견문, 경험 등을 바탕으로 수행한 창의적 표현활동과 그 결과물을 말한다.

「방송법」상 “방송”은 “방송프로그램을 기획·편성 또는 제작하여 이를 공중(公衆)에게 송신하는 것”으로 정의⁴⁾하고 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방송물을 구매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임에 따라 우선 구매제도가 운영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함.

한편, (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은 개정안의 장애예술인의 방송 참여 확대라는 정책적 취지에는 공감하나, 특정 매체인 ‘방송’만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기보다는 영화·출판 등 여타 문화예술 영역을 함께 포괄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384

4) 「방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송**”이라 함은 방송프로그램을 기획·편성 또는 제작하여 이를 공중(개별계약에 의한 수신자를 포함하며, 이하 “시청자”라 한다)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 가. 텔레비전방송 : 정지 또는 이동하는 사물의 순간적 영상과 이에 따르는 음성·음향 등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
 - 나. 라디오방송 : 음성·음향 등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
 - 다. 데이터방송 : 방송사업자의 채널을 이용하여 데이터(문자·숫자·도형·도표·이미지 그 밖의 정보체계를 말한다)를 위주로 하여 이에 따르는 영상·음성·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인터넷 등 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 라. 이동멀티미디어방송 : 이동중 수신을 주목적으로 다채널을 이용하여 텔레비전방송·라디오방송 및 데이터방송을 복합적으로 송신하는 방송

참고 1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제 개요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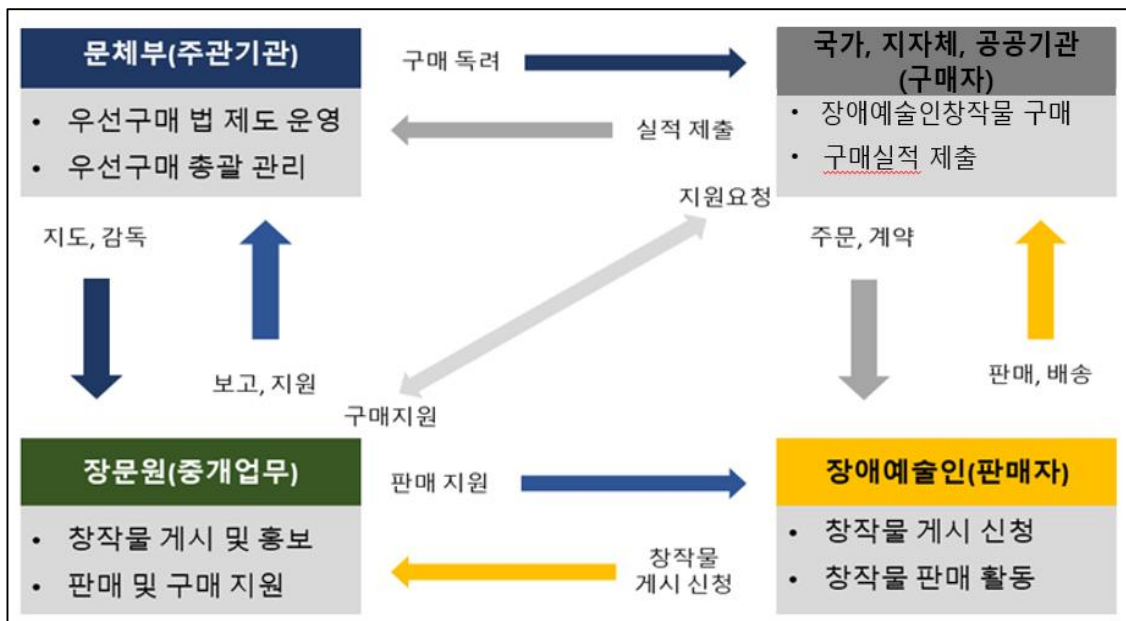
□ 개념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여 장애예술인의 창작 활동과 시장 진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

□ 관련 근거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9조의2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
- 「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에 관한 고시」

□ 추진체계



* 장문원: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 우선구매 기관

- 2025년 기준으로 국가기관 64개* (하위기관을 포함하는 최상위기관 개수), 지방자치단체 436개 및 공공기관 331개 등 총 831개 기관 대상

* 소속기관 포함한 국가기관 총 개수 6,897개(법원 등 포함 / 개별 실적입력 대상기관)

□ 우선구매 대상 창작물

-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공예품, 공연, 미술품이 대상이 되며, 형태는 재화(물품)와 용역(서비스)으로 구분될 수 있음.

구분	창작물의 정의
공예품 (「공예진흥법」 제2조 2호)	공예의 결과물로서 실용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물품
공연 (「공연법」 제2조 1호)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實演)에 의하여 공중(公衆)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
미술품	회화, 조각, 공예, 사진, 서예, 벽화, 미디어아트 등

법률명	조문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9조의2(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①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기업이 직접 생산·제공 및 수행하는 물품·용역 및 공사(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기업제품”이라 한다)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구매계획에는 장애인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구분하여 포함시켜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장애인기업제품 구매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포함시켜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구매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구매계획을 확인한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매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장애인기업제품 구매계획의 이행점검 등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장애인기업제품의 구매실적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구매실적을 확인한 결과 구매실적이 제3항에 따른 구매목표에 현저히 미달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개선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공공기관의 구매촉진) ①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구매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구매목표를 설정할 때에는 공공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구매액에

법률명	조문
	포함되는 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의 범위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할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목 및 수량 2.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2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④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다. ⑤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와 유사한 시설에서 동 계약을 대행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⑦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기관에 대한 기관평가를 실시할 때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⑧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제출한 전년도 구매실적이 제3항제2호에 따른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 등)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물품·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과 제공하는 용역(이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이라 한다)을 우선구매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매계획에는 공공기관별 총구매액(물품과 용역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비용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목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법률명	조문
	③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의계약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기관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실적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구매계획의 이행 점검 등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실적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제출한 전년도 구매실적과 해당 연도의 구매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